

서울고등법원(인천) 2021. 9. 2 선고 2021나11846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서울고등법원(인천) 2021. 9. 2 선고 2021나11846 판결

인천지방법원 2021. 3. 19 선고 2020가합51234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안주현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정섭

변론종결 2021. 7. 1.

판결선고 2021. 9. 2.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21. 3. 19. 선고 2020가합51234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와 주식회사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8. 11. 30. 체결된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주식회사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2018. 12. 7. 접수 제445811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5면 13, 14행의 “피고가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의 선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가 들고 있는 사정이나 피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악의의 추정을 뒤집고 사해행위인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으로 D를 비롯한 C의 일반채권자를 해하게 된다는 점을 피고가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박순영, 판사 이재환, 판사 임 솔

별지